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9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3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적용 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10

I.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9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8인
- (2) 제 안 일 : 2025. 7. 31.
- (3) 회 부 일 : 2025. 8.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

임(안 제7조의4 및 제8조의3).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이인선 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정 ○ 요건: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어음결제비율 = 어음결제/총구매금액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 공제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지급기일</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15일 이내</td><td>0.5%</td></tr> <tr> <td>16~30일</td><td>0.3%</td></tr> <tr> <td>31~60일</td><td>0.15%</td></tr> </tbody> </table> ○ 적용기한: <u>2025. 12. 31.</u>	지급기일	공제율	15일 이내	0.5%	16~30일	0.3%	31~60일	0.15%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6. 1. 1. (이인선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지급기일	공제율								
15일 이내	0.5%								
16~30일	0.3%								
31~60일	0.15%								

* 이인선의의원안 2025. 2. 3. 발의(의안번호 7864),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추경호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7),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중소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말 일
몰이 도래하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통상적으로 대기업,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로 이루어진 거래관계
에서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어음을 발행하면 1차 협력사는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화하고,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다시 어
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 협력사 및 2차 협력사
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어음할인을 만큼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상생결제는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
준의 낮은 수수료로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발
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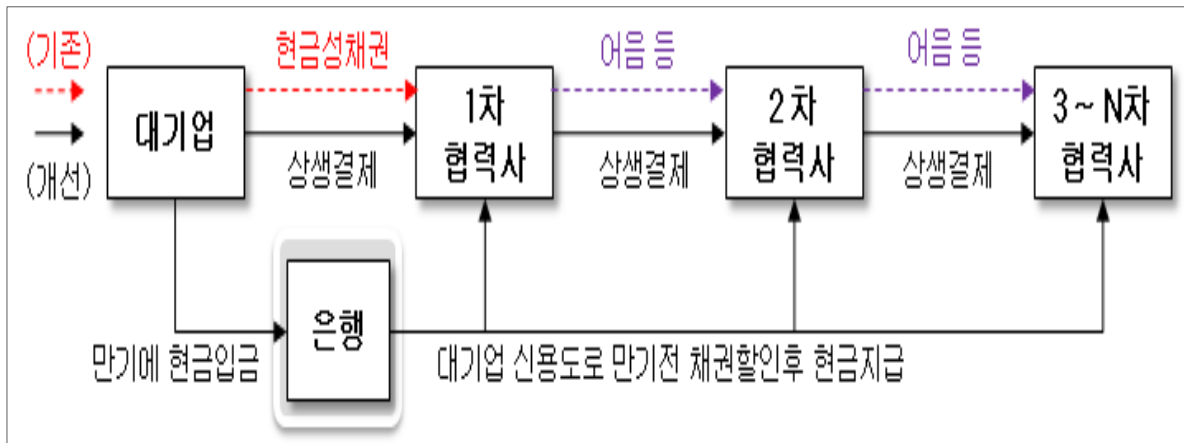
기존에 1차 협력사(판매기업)만 받을 수 있었던 전자방식의 외상매
출채권 담보대출을 2·3차 협력사에까지 확대하여 2·3차 협력사도
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으로 담보된 1차 협력사의
외상매출채권을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¹⁾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
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
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상생결제시스템 기본 구조]



이는 현금, 어음 등 기존 거래수단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① 신용도가 높은 구매기업(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② 상환청구권²⁾이 없는 매출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연쇄부도 위험을 해소하고, ③ 구매기업 납품대금을 은행의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보관 후 직접 지급함으로써 하위 거래기업의 대금회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④ 결제기간이 짧고, ⑤ 매출채권에 어음과 같이 배서(背書)³⁾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모든 대금결제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⑥ 만기일 전에도 구매기업 발행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낮은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특징이 있음.

2)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 행사

3) 배서란 어음의 수취인이나 그 후자가 보통 어음의 뒷면에 어음상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이를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으로 수표 등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이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현행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세액공제 제도는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다른 중소·중견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로써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도입 당시에는 중소기업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에는 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공제율을 상향하고 그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점차 지원을 강화해왔음.

연도별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73개 기업 2조 8,559억원에서 2024년에는 1,016개 기업 21조 6,41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10년간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 이용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중 소	참여기업 수		164	292	367	490	634	778	757	777	778	780
	결제액	당해년도	6,805	22,020	30,063	28,179	18,527	17,386	20,419	23,992	25,619	29,456
		증감률	-	223.6	36.5	△6.3	△34.3	△6.2	17.4	17.5	6.8	15.0
중 견	참여기업 수		109	140	150	171	199	214	219	233	235	236
	결제액	당해년도	21,754	72,420	99,237	114,330	142,453	151,537	178,115	187,056	188,051	186,955
		증감률	-	232.9	37.0	15.2	24.6	6.4	17.5	5.0	0.5	△0.6
합 계	참여기업 수		273	432	517	661	833	992	976	1,010	1,013	1,016
	결제액	당해년도	28,559	94,440	129,300	142,509	160,980	168,923	198,534	211,048	213,670	216,411
		증감률	-	230.7	36.9	10.2	13.0	4.7	17.5	6.3	1.2	1.3

주1: 중소기업은 2016년부터, 중견기업은 2018년부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실적을 합산한 값임.

주2: 2024년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따라 분류된 자료임.

자료: 연도별 상생결제 실적 자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한편,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는 2024년 실적치 기준 약 40억원이고, 조세지출액 규모의 추이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과 2026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소득세	법인세	합계
2017	0.3	2.2	2.5
2018	1	2.9	3.9
2019	1	7	8
2020	1	7	8
2021	0.9	11	12
2022	0.5	20	21
2023	1	38	39
2024	1	39	40
2025(전망)	1	31	32
2026(전망)	1	32	3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에 따른 유동성 저하,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위험 노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상생결제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금유동성 확보 및 금융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

□ 다만, 세액공제 외에도 상생결제 제도 활용에 따른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기업이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고, 발주기업이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가 면제됨⁵⁾.

4) 기획재정부,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020.9.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8호)」

I.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액공제가 가장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1항) ○ 세액공제 대상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기금 포함)에 출연 ③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④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신 설>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10% ○ 적용기한: <u>2025. 12. 31.</u>	○ 공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추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송언석의원안)</u>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10% (윤준병의원안은 ②의 경우 50%) ○ 적용기한: <u>2028. 12. 31.</u>(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u>2035. 12. 31.</u>(박수현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송언석의원안) 2025. 1. 1.(윤준병의원안) 2026. 1. 1.(이인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협력중소기업 자산무상임대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2항) ○ 요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 공제율: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3%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3항) ○ 요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 ○ 공제율: 투자금액의 1%(대), 3%(중견), 7%(중소)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시 세액공제(제8조의3제4항) ○ 요건: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중고자산 무상 기증 ○ 공제율: 해당자산 시가의 10%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송언석의원안)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u>2028. 12. 31.</u>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 (이인선의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4. 10. 24. 발의(의안번호 4884), 이인선의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60), 송언석의원안 2025. 2. 20. 발의(의안번호 8311), 이만희의원안 2025. 3. 14. 발의(의안번호 8927), 박수현의원안 2025. 5. 12. 발의(의안번호 10481), 김상훈의원안 2025. 7. 9. 발의(의안번호 11359), 추경호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7), 허성무의원안 2025. 8. 25. 발의(의안번호 1232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각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2030년 말까지 5년(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의원안) 또는 2035년 말까지 10년(박수현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이고, 김상훈의원안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그 외에 협력중소기업 자산무상임대에 대한 세액공제,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시설투자 및 연구시험용 시설 교육기관 기증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8조의3제1항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농어촌·농어업 인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기금 포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세법개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4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연혁]

시행연도	내 용
2011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요건: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출연 ②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7% - 적용기한: 2013. 12. 31.
2014년	- 적용기한 연장: 2016. 12. 31.
2017년	- 공제율 상향: 해당 출연금의 10% - 적용기한 연장: 2019. 12. 31.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
2020년	- 공제대상 신설: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적용기한 연장: 2022. 12. 31.
2022년	- 공제대상 신설: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2023년	- 적용기한 연장: 2025. 12. 31.

동 제도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주요사업은 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⁶⁾,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⁷⁾을 비롯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⁸⁾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⁹⁾, ③ 상생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¹⁰⁾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사업¹¹⁾, ④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지원사업¹²⁾이 있음.

□ 현행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자산무상임대 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3%를 무상임대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2016년 말 세법개정으로 도입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차례 적용기한 연장이 이루어져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현행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

6)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내면 보증기관은 이를 기초로 보증배수 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

7) 대기업이 협력재단에 협력중소기업과 지원사업을 지정하여 출연금을 내고, 협력재단은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기술보호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10)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11)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동 세액공제는 1981년 말 세법개정으로 1982년부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서,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임.

- 다음으로 현행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교육기관 기증 세액공제는 산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산의 시가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어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연혁]

유형	내용	공제율
상생협력기금 출연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 -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10%
유형고정자산 무상 임대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	3%
수탁기업 시설 투자	-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	1%(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연구시험용자산 무상 기증	-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자산 등의 자산을 대학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	10%

□ 한편,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¹³⁾는 2024년 실적치 기준 약 294억원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다가 2024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됨.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득세	0	0	0.8	0.5	0.5	0.2	0.7	0.7
법인세	179	202	212	329	408	294	279	285
합계	179	202	213	329	409	294	280	286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문 의 처

02)6788-5154

13) 법 제8조의3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시 장부가액의 3% 공제,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7%) 공제, 시설 등을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해당 자산 시가의 10% 공제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임.